

명예교원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명예교원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명예교원에게 적용한다.

제 1 장 명 예 총 장

제 3 조 (자격) 본 대학교 전임 총장 중에서 대학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.

제 4 조 (임명) 명예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5 조 (임무) ① 명예총장은 본 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.

② 명예총장은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 6 조 (예우) 명예총장은 총장에 준하는 처우 및 예우를 받는다.

제 2 장 명 예 교 수

제 7 조 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(개정 2018. 3. 1, 2019. 11. 1)

1.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교수직위로 퇴직한 교원 중 본 대학교 발전 및 교육, 학술 연구의 업적이 현저하며, 향후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할 자.(개정 2018. 3. 1, 2019. 11. 1)
2. 본 대학교에서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봉직한 자 중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. (개정 2012. 12. 1)
3. 기타 전임교원 중 본교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(신설 2023. 8. 31)

제 8 조 (추대절차) 명예교수는 소속 대학(원)장이 추천하고 명예교수추천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얻어 총장이 추대한다. (개정 2012. 12. 1, 2018. 3. 1)

제 9 조 (구비서류) 명예교수를 추대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교육 및 학술연구의 공적조서
3. 본 대학교 발전에 대한 공적조서
4. 명예교수 추천서
5.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

제 10 조 (추대기간) ① 명예교수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재위축할 수 있다. (신설 2023. 7. 1.)

② 명예교수를 재위축할 때에도 명예교수추천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신설 2023. 7. 1.)

③ 명예교수의 추대기간은 만 70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 대학(원)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나, 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의를 할 수 없다.

(개정 2012. 12. 1, 2014. 11. 1, 2018. 3. 1, 2023. 7. 1.)

제 10 조의 2 (명예교수자격의 철회) 명예교수로 추대된 후 본교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위반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. (신설 2012. 12. 1)

- 제11조 (처우와 강의)** ①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본 대학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 (개정 2014. 11. 1, 2019. 11. 1)
-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명예교수에게 학기당 1개 과목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, 강사료는 강사에 준하여 지급한다. (개정 2012. 12. 1, 2014. 11. 1, 2018. 3. 1, 2019. 11. 1)
-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명예교수에게 공동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8. 3. 1, 개정 2019. 11. 1)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다른 규정의 폐지)**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1. 명예총장 규정
 2. 명예교수 규정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